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0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송옥주 · 이개호 · 황명선  
박 정 · 한민수 · 서미화  
박해철 · 전종덕 · 김현정  
한정애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

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3항 중 “기관에”를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성격이나 조사·분석의 난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완료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⑦ 공사의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

여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전문기관과 준비절차,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신 설>

여 완료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공사의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전문기관과 준비절차,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다.